

인천지방법원 2023. 2. 15 선고 2022가단26650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중

담당변호사 류한동

피 고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

담당변호사 송하섭

변 론 종 결 2023. 1. 18.

판 결 선 고 2023. 2. 1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아파트’라고 한다)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9. 9. 30. 접수 제419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9. 9. 30. 접수 제41960호로 채권최고액 5,200만 원, 채무자 원고, 근저당권자 소외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고 한다)가 마쳐졌다.

나. 그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2. 8. 16.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전되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동의 없이 마쳐졌을 뿐만 아니라, 설령 유효하더라도 그 원인채권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.

나. 판단

1) 원고의 동의없이 등기가 마쳐졌는지 여부

갑 제3호증의 1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동의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보일 뿐,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의 동의 없이 마쳐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2)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

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는 2020. 4. 1. 당시 근저당권자인 C에게 피담보채무를 인정하며,

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이에 의하면, 원고는 위 채무를 승인하였거나,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고,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로부터 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,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병국

별지